

2024년 제7회 간호직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부곡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국립부곡병원장

1 임용 예정 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간호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2명	채용일 ~ 2년	국립부곡병원 간호과(경남 창원군)

※ 임기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 예정 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간호	간호직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신질환자 등 환자 간호 업무(교대 업무)병동 약품 및 물품관리재원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병원 내 업무분장 등에 따른 업무처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거주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7.18.)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간호직 (일반임기제)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4.7.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7.1.) 기준]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의료기관*에서의 1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근무경력: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력에 한함
② 관련분야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 [근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증명하며, 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기간별 차등 배점(1년 이상에 대해 차등 배점)
 - *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관련분야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급수별 차등 배점)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6.20.(목) ~ 7.1.(월)	'24.6.20.(목) ~ 7.1.(월)	'24.7.11.(목) 예정	'24.7.18.(목) 예정	'24.7.30.(화)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6. 20.(목) ~ 7.1.(월), 08:3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주소	연락처
(50365)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부곡로 145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	☎055-520-2665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간호직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우대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 30일 이내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호	55,175	25,274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055-520-2665)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간호	간호직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2명	국립부곡병원 간호과 (경남 창원군)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등 환자 간호 업무(교대 업무) ○ 병동 약품 및 물품관리 ○ 재원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병원 내 업무분장 등에 따른 업무처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간호 업무에 필요한 지식 ○ 기본간호 및 임상실무 간호지식 ○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지식 ○ 약품 관련 지식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	---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의료기관*에서의 1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경력: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력에 한함
------	---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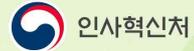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 응시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필수서류)	○ 간호사 면허증

구 분	내 용
9.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및 개명 이력이 있는 자(여성도 해당) 필수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개명 전/후 성명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0.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2. 우대 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대한민국 공직, 공무원, 공직문화, 채용시험 정보까지 한번에, 제대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은?

7급인 채용시험 봄

공무원이 되기까지

I am 공무원 okay요~

직업으로서 공무원 어때요?

△△부처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인가요?

요즘 공직문화 얼마나 달라졌어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가요?

공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공직생활의 장점과 매력은?

개인의 성장도 중시하나요?

우리별 진짜 좋은가요?

시험일정은? 선발인원은? 꼭 알아둘 응시요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직문화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바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에서 확인하세요!



★ 전파공매!								
2024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구분	원서제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채(행정)	1. 25. ~ 29.	3. 2.	6. 28. ~ 7. 3.	-	10. 29. ~ 31.	11. 15.	
	5급공채(기술)			7. 4. ~ 9.				
	외교관후보자 선발			6. 28 ~ 7. 3.				
	7급공채	5. 16. ~ 20.	7. 27.	10. 12.		12. 4. ~ 7.		12. 20.
	9급공채	1. 18. ~ 22.	3. 23.			5. 28. ~ 6. 2.		6. 2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30. ~ 2. 2.	3. 2.	4월 중	5. 9. ~ 10.	5. 24.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7. 22. ~ 26.	8. 31.	10월 말	11. 26. ~ 28.	12. 20.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6. 3. ~ 11.	7. 27.	9월 중	11. 6. ~ 13.	12. 30.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3. 26. ~ 4. 1.	-	4월 말	6. 20. ~ 21.	8. 14.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들어오셔서
 2024년도 시험일정 사전 알림 신청 을 선택하시면
 원서제출기간 및 시험기일 1주일 전에 SMS 문자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예정직렬 및 선발인원, 응시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방식 등의 자세한 시험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급인 채용시험 봄은 2040 청년(청춘) 세대가 대한민국 정부, 공직문화,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이자 동기부여가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한 공직 소통 채널입니다.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

응시번호	성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직급
		국립부곡병원	간호직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	
2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3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4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자격(면허)증 사본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필수 제출, 병역사항 기재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이름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여성도 해당)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10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1	우대요건 자격증 1부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상기번호 순서대로 편철**, 제출유무 란에 “○” 표시 한 후 **가장 앞면에 제출**

* **모아찍기 금지, 낱장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국립부곡병원장 귀하

본인은 국립부곡병원 제7회 국립부곡병원 간호직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선발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일반임기제)/ 간호직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제7회 간호직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간호서기(일반임기제)/ 간호직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 간호서기(일반임기제) / 간호직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
(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A4용지)일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①응시 번호		② 응시분야		응시 자격 요건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자격종	자격(면허)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부곡병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u>인사혁신처</u>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u>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u>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부곡병원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2.6.30	'14.7.1	(주) 00	사원		주 40시간 근무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table border="1"><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 '담당업무' 란은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및 관련분야경력 등에 해당하는 경력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

<별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부곡병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